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3. 31 선고 2019가단899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한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재성

변론 종결 2021. 3. 3

판결 선고 2021. 3. 3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이 피고와 구리 완성품에 관하여 2018. 8. 22. 체결한

129,426,015원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9,426,015원 및 이에 대한이 판결

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8. 4. 14. C과 구리 빌릿,슬래브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(이하 '이 사건 납품계약'이라 한다).

제2조(계약의 범위)

- ④ 원고는 C에 4억 원을 예치하며, C은 4억 원에 준하는 구리 스크랩 및 빌릿, 슬래브 재고를 항상 보유한다.
- ⑦ 계약기간 내의 C의 모든 매출은 원고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. 단, 위반 시 매출금의 2배를 변상 조치한다.

제4조(변상금)

- ①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변상 조치한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②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C은 해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상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, 본 항의 규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.

나. C은 2018. 8. 22.경 피고에게 합계 129,426,015원 상당의 구리 빌릿을 매도하였 고(이하 '이

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같은 날 주식회사 D에 합계 65,141,285원 상당의구리 스크랩을 매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새호증, 을 1~1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C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위반한 것이다.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위반에 따른 변상금 채권과그 해지로 인한 예치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. 원고는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3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[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변상금의 지급을구하는소를 제기하였는데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101),법원은 2020. 11.4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].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변상금이나 예치금반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(예치금의 경우 그 존재와 액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)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광민